

[별표 4]

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표(제73조제2항 관련)

토 지 매 수 및 보 상 금 액 별	위임 수수료 요율기준 (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에 대한 비율)	비 고
10억원 이하	20/1000 이내	1. "토지매수 및 보상금액"이란 토지매입비,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,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)등의 합계액을 말한다.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7/1000 이내	
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5/1000 이내	2.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임 수수료의 요율에 가산한다.
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	13/1000 이내	3.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, 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임 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.
100억원 초과	10/1000 이내	4.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은 위임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.
		5. 위임자와 수임자는 매수완료일 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.